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표(제17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지 급 대 상
1.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수석전문관 포함)
2. 외무공무원	6등급
3. 연구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 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4. 지도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 호가목·나목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5.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보)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6. 국가정보원 직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7. 경호공무원	4급 이상
8. 경찰공무원	총경 이상
9. 소방공무원	소방정 이상
10. 교육공무원	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총장의 봉급을 받 는 공무원,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 의 학장·처장·실장·부장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다.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라. 4급상당 이상의 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 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11.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가급

비고

1.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관리업무수당은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교수보직경비를 지급받는 교육공무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